

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

통지번호		
반환대상자	성명	
	주소	
반 환 내 용	임시지급금 금액	최종확정 배상금
	반환할 금액	
	1. 임시지급금과 최종확정 배상금의 차액: 원 2. 위 배상금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인 년 월 일부터 차액 반환일까지 위 차액에 대하여 연 5%의 이율에 따른 이자: 원 3. 합계: 원	
	반납기한	반납 은행 계좌

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반환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납기한까지 위 금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
하
부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1. 배상금의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위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반납 은행 계좌로 반납하여야 합니다.
2. 임시지급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: (전화번호: